

의안번호	2219623
의 퇴 인	송석준의원
회 답 일	2026.10.8.
추 계 번호	26D3191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작성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6억 2,900만원, 2030년 96억 8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53억 1,500만원(연평균 30억 6,300만원)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전·지선)	2031	합계	연평균
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 (안 제148조제1항제1호)	-	4,791	-	4,733	-	9,524	1,905
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80% (안 제151조제9항)	-	838	-	4,953	-	5,791	1,158
합계	-	5,629	-	9,686	-	15,315	3,063

주: 1.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고,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(안 제148조제1항제1호)은 재량규정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이며, 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80%(안 제151조제9항)는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

2. 본 추계에서는 현행 투표용지 인쇄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의 하한선(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)으로 보고,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은 80%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48조제1항(부재자투표소의 설치)	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선거일 전 4일부터 1일 동안 읍·면·동마다 1개소씩 부재자투표소를 설치·운영	의무규정
2	안 제148조제1항제1호(부재자투표소의 설치)	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군부대 밀집지역 외에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을 추가	재량규정
3	안 제151조제9항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선거일의 투표용지는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되, 구체적인 수량은 각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함	의무규정
4	안 제38조(부재자·거소·선상투표신고)	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로서 제3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고, 우편에 의한 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48조제1항(부재자투표소의 설치)	X	운영일수가 줄어 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1일에 투표 수요가 집중되어 부재자투표소와 투표관리인력 확충 등의 소요가 발생할 수 있어 재정소요 변동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2	안 제148조제1항제1호(부재자투표소의 설치)	○	—
3	안 제151조제9항(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)	○	—
4	안 제38조(부재자·거소·선상투표신고)	X	부재자투표신고 인원, 평균 등기우편 요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‘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’, ‘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80%’에 한정하여 추계
 -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며, 재외선거, 보궐선거는 제외
 - 개정안에 따라 현행 사전투표제도가 부재자투표제도로 변경되는 경우, 현행 사전투표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, 현행법에 따른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- 본 추계에서는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을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서 19~30세 인구비율이 동일한 연령대의 전국 평균(13.1%)보다 1.5배 높은 읍·면·동 지역으로 가정
-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투표용지 인쇄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의 하한선(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)으로 보고, 개정안에서 규정한 “선거인 수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”의 상한선인 80%로 가정하여 그 차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⁾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6.3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	2031
소비자물가상승률(CPI)	2.1%	2.3%	2.0%	2.0%	2.0%	2.0%	2.0%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(안 제148조제1항제1호)

□ 개정안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
□ 본 추계에서는 공직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156개소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○ (부재자투표소 설치 수량) 2028년 국회의원선거 156개소, 2030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312개소

- 행정안전부의 연령별 주민등록인구 현황(2026년 8월 말 기준)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으로 추정되는 19~30세 연령구간의 인구비율이 전국 평균(51,084,159명 중 6,692,277명, 13.1%)보다 1.5배 높은 읍·면·동을 산출
- 그 결과, 156개로 추정되었고 본 추계에서는 해당 읍·면·동에 부재자투표소를 1개소씩 추가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
○ (1개소당 비용)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비용은 2028년 3,071만원, 2030년 1,517만원으로 추정

-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설치·운영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「2024년도 예산안 각 목명세서」의 사전투표관리 관련 비용항목을 추출·집계한 1개소당 1,928만원(2024년 기준)에서 1일 운영에 따라 감소하는 인건비·임차·사용료·장비운영비 1일분 586.5만원을 뺀 1,342만원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²⁾
- 다만, 최초 실시 선거연도인 2028년에만 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 1,613만원(2028년 기준)을 추가³⁾⁴⁾

2) 설비·물품 177만원, 인건비(수당·식대·여비) 864만원, 임차·사용료 26만원, 통신 85만원, 우편·회송 491만원, 장비운영·유지 283만원, 기타 2만원으로 선상·거소투표 및 재·보궐선거분은 제외한 금액

3) 사전투표소 설치 첫해에는 본인확인기, 투표용지발급기 등 사전투표운용장비 제작이 필요하며, 내구연한(5년 정도)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중 최초 실시 선거연도인 2028년에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
4) 조달청 나라장터 계약내역에 따르면 본인확인기(2022년, 17,062대 187억 811만원)와 투표용지발급기 등(2023년, 17,062대 321억 200만원)의 1대당 단가는 각각 약 110만원, 188만원이고, 1개소당 장비대수(각 4.8대)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7년 기준 1개소당 1,581만원(본인확인기 595만원, 투표용지발급기 등 986만원)으로 추정

[표 2] 부재자투표소 1개소당 비용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전·지선)	2031
1개소당 설치·운영비용	1,430	1,458	1,487	1,517	1,548
사전투표운용장비 비용	—	1,613	—	—	—
합계	1,430	3,071	1,487	1,517	1,54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에 부재자투표소를 추가로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7억 9,100만원, 2030년 47억 3,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3]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전·지선)	2031
수량(A, 개소)	—	156	—	312	—
1개소당 비용 (B, 만원)	—	3,071	—	1,517	—
추가재정소요(=A×B, 백만원)	—	4,791	—	4,733	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80%(안 제151조제9항)

- 개정안은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절차사무편람의 하한 대비 인쇄매수가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- 본 추계에서는 선거인 수, 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 수량, 개정안에 따른 인쇄율 증분, 투표용지 인쇄단가를 곱하여 산출
- (선거인 수) 공직선거가 있는 해인 2028년 45,528,657명, 2030년 45,819,545명
 -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(2022~2072, 2023년 12월 발표)에 근거하여 18세 이상 인구 수를 합한 값

- (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) 2028년 국회의원선거 2매, 2030년 대통령선거 1매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7매
- (인쇄율 증분) 2028년 국회의원선거 20%p, 2030년 대통령선거 20%p, 전국동시지방선거 30%p
 - － 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「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」은 선거인 수 대비 인쇄율 하한선을 국회의원·대통령선거 60%, 지방선거 50%로 규정하고 있음⁵⁾
- (인쇄단가)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단가 42원(2024년 기준)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「2024년도 예산안 각목명세서」를 참고하여 추정하였고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28년 46원, 2030년 47원

[표 4] 투표용지 인쇄단가 추정: 2027~2031년

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
투표용지 인쇄단가	45	46	47	47	4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추계결과, 개정안에 따라 선거일의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80%로 작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8억 3,800만원, 2030년 49억 5,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

[표 5] 투표용지 인쇄율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		2031	합계
				대선	지선		
선거인 수(a, 명)	—	45,528,657	—	45,819,545		—	—
선거인 1명당 투표용지(b, 매)	—	2	—	1	7	—	—
인쇄율 증분(c)	—	20%p	—	20%p	30%p	—	—
투표용지 인쇄단가(d, 원)	—	46	—	47		—	—
추가재정소요 (=a×b×c×d, 백만원)	—	838	—	431	4,522	—	5,79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5)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, 「진상규명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」(2026.6.19.) 참조.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는 지방선거에도 60%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제9회부터 50%로 인하함

다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56억 2,900만원, 2030년 96억 8,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53억 1,5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 (국선)	2029	2030 (대선·지선)	2031	합계
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 설치	-	4,791	-	4,733	-	9,524
투표용지 선거인 수의 80%	-	838	-	4,953	-	5,791
합계	-	5,629	-	9,686	-	15,31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대학 등 학교 밀집지역 부재자투표소는 읍·면·동 기준 인구변화를 반영하지 않고, 투표용지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상 현행 인쇄 하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